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¹⁾

I. 사건개요

프랑스 의회는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2023년 7월 27일 법률’(LOI n° 2023-668 du 27 juillet 2023 visant à protéger les logements contre l’occupation illicite, 이하 ‘심판대상법률’이라 한다)을 2023년 6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가결하였다.

심판대상법률은 주택의 불법점거로부터 소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택의 불법점거의 경우 프랑스 형법에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에는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Loi n° 2007-290 du 5 mars 2007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이 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협력을 얻어 주거의 불법점거자를 강제적으로 퇴거하는 절차가 창설되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입법자는 종래의 법체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주택의 불법점거로부터 소유자(petits propriétaires)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심판대상법률을 제정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의 연합인 ‘새로운 생태 및 사회인민연합’(Nouvelle Union populaire écologique et sociale, Nupes)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은 2023년 6월 26일에 프랑스 헌법 제61조 제2항²⁾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대상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다.

1) Décision n° 2023-853 DC du 26 juillet 2023.

2) 프랑스 헌법 제61조 “① 조직법률은 공포되기 전에, 헌법 제11조에서 언급된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의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

②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의 일부 조항이 법률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é)과 명확함(intelligibilité)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objectif de valeur constitutionnelle), 형벌의 필요성 및 비례성에 반하며,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과 주거의 불가침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6일 결정을 통해서 심판대상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 또는 조건부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조건부 합헌결정을 선고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문

1.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에 따라 규정된 형법전 제L. 226-4조의 마지막 항은 판시이유 49에서 실시한 유보 하에 헌법에 합치한다.

3. 심판대상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II는 헌법에 합치한다.

III.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사전적 및 추상적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2023년 7월 27일 법률

제1조: 형법전 제III권 제 I 절에 다음과 같은 제 V 장이 추가된다.:

《 제 V 장 주거용 또는 상업적, 농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에 대한

불법 점거

제315-1조: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주거용 또는 상업적, 농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2년의 금고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침입을 한 다음에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행위는 2년의 금고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5-2조: 해당 장소로부터의 퇴거를 명하는 법원의 최종적이며, 집행 가능한 결정을 위반하면서, 주거용 건물에 권리나 자격이 없이 2개월 이상 거주하는 행위는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조: 민사집행절차법전(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제L. 412-3조에 다음과 같은 한 항이 추가된다.: 《 본조 제1항 및 제2항은 퇴거 명령을 받은 점거자가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조: 형법전 제L. 226-4조 제1항의 《 1년 》이라는 용어는 《 3년 》이라는 용어로 변경되며, 《 15,000유로 》라는 용어는 《 45,000유로 》라는 용어로 변경된다.

제6조: I. 형법전 제L. 226-4조에 다음과 같은 한 조항이 추가된다.: 《 사람에게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 일체의 주거용 건물은, 사람의 거주 여부나 주된 거주지인지에 관계없이, 특히 본조가 규정하는 주거이다. 》

II.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Loi n° 2007-290 du 5 mars 2007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 주된, 》이라는 용어 다음에 《 또는 주거용 건물에 》라는 용어를 추가한다;

b) 《 또는 주거가 점거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 주거가 점거된 사람을 대리하는 모든 사람 》이라는 용어 다음에 《 또는 점거된 건물의 소유자 》;

c) 《 자신의 주거 》라는 용어 다음에, 《 또는 자신의 재산 》이라는 용어를 추가한다;

d) 《 , 시장이 또는 집행관이 》라는 용어가 추가된다;

2° 제1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한 항이 추가된다.:

《 소유자가 점거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의 국가의 대표자는 이와 같은 권리의 확증을 72시간 내에 세무기관에 요청한다. 》;

3° 제1항, 제2항 제1문 및 제2문 및 마지막 항에서 《 도지사 》라는 용어는 《 중앙정부가 파견한 도지사 》라는 용어로 변경된다;

4° 제2항의 제1문에서 《 한(prise) 》이라는 용어 다음에, 《 , 점거자의 개인적 및 가족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라는 용어가 추가된다;

5° 제3항 제1문 다음에 다음의 제2문이 추가된다.: 《 점거된 건물이 신청인의 주거가 아닌 경우에, 이 기간은 7일로 연장되며, 행정법원법전 제L. 521-1조 내지 제L. 521-3조에 근거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 대표자의 결정의 집행은 중단된다. 》

제7조: 민법전 제L. 1244조에 다음 한 항이 추가된다.:

《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자격이 없는 점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유지의무를 면제하며, 그 결과로 점거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유지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자격이 없는 점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면제의 혜택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거주 조건이 형법전 제L. 225-14조가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항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3): 주된 거주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타인의 주거에 대한 침입 및 거주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주거가 점거된 사람 또는 주거가 점거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 주거가 점거된 사람을 대리하는 모든 사람은 고소를 제기하고, 해당 주거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주거에 대한 불법점거임을 확인한 다음에, 도지사로서 하여금 점거자에게 해당 장소에서의 퇴거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면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 : “주된 거주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타인의 주거 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침입 및 거주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주거가 점거된 사람 또는 주거가 점거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 주거가 점거된 사람을 대리하는 모든 사람 또는 점거된 건물의 소유자는 고소를 제기하고, 해당 건물이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의 재산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사법경찰관, 시장 또는 집행관이 주거에 대한 불법점거임을 확인한 다음에, 도지사로서 하여금 점거자에게 해당 장소에서의 퇴거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점거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이와 같은 권리의 확증을 72시간 내에 세무기관에 요청한다.

도지사는 퇴거명령에 대한 신청이 접수된 이후 48시간 내에 점거자의 개인적 및 가족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긴급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지사는 퇴거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가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결정의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도지사의 명령의 집행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점거된 건물이 신청인의 주거가 아닌 경우에, 이 기간은 7일로 연장되며, 행정법원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제L. 521-1조 내지 제L. 521-3조에 근거하여 가치분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 대표자의 결정의 집행은 중단된다. 도지사의 명령은 점거자에게 통지되며, 시와 해당 장소에 게시된다.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명령은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도지사는 퇴거명령에 대한 신청이 접수된 이후 48시간 내에 결정을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긴급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지사는 퇴거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가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결정의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도지사의 명령의 집행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도지사의 명령은 점거자에게 통지되며, 시와 해당 장소에 게시된다.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명령은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형법전’

제L. 225-14조: 취약함 또는 의존상태가 분명하거나, 행위자에게 인식된 사람을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노동 또는 주거 조건에 복종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금고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 226-4조: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 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1년의 금고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전’

제L. 1244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파손이 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건축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절차법전’

제L.412-3조: 퇴거명령을 받은 주거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의 점거자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경우 법관은 이 점거자에게 새로운 거처의 마련을 위한 기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연장도 승인할 수 있다.

퇴거를 명하는 법관은 동일한 조건 하에 퇴거 기간을 승인할 수 있으며, 퇴거 기간의 연장도 승인할 수 있다.

IV.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1조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1조는 형법전에 제315-1조를 추가한다. 새롭게 보충된 제315-1조는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일정한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건물에 침입한 이후에 거주하는 행위를 처벌한다(판시이유 2).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1조에서 사용된 “주거용 또는 상업적, 농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이라는 문언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법률 제1조가 새롭게 규정한 범죄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1조가 규정한 범죄행위와 주거침입죄를 규정한 형법전 제226-4조에 따른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의 접근가능성과 명확함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1조가 범죄와 형벌의 필요성 및 비례성에 반한다는 주장도 하였다(판시이유 3).

3) 첫째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이하 ‘1789년 인권선언’이라 한다) 제8조는 “법률은 완전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 및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프랑스 헌법 제61조⁴⁾는 의회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일반적인 평가권 및 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지 않았다. 범죄행위와 결부된 형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평가권에 속하지만, 범죄행위와 형벌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판시이유 4).

4) 프랑스 헌법 제34조는 “법률은 중죄 및 경죄 그리고 중죄 및 경죄에 대한 형벌 … 을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와 1789년 인권선언 제8조⁵⁾에 따라 입법자는 스스로 형법의 적용영역을 정하고, 자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명확한 표현으로 범죄행위를 정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판시이유 5).

5) 심판대상법률 제1조에 따라 보충된 형법전 제315-1조는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주거용 또는 상업적, 농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건물에 침입한 이후에 거주하는 행위에 대해 2년의 금고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판시이유 6).

6) 한편으로, 주거용 또는 상업적, 농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이라는 개념은 불명확하지도, 불확실하지도 않다(판시이유 7). 다른 한편으로, 심판대상법률 제1조를 통해 입법자는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였다(판시이유 8).

7) 따라서 심판대상법률 제1조가 규정한 범죄행위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필요성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판시이유 9).

4) 프랑스 헌법 제61조 “① 조직법률은 공포되기 전에, 헌법 제11조에서 언급된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의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

②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5) 1789년 인권선언 제8조 “법률은 완전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 및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8) 둘째로, 1789년 인권선언 제6조는 “법률은 … 보호하든지, 처벌하든지, 만인에 대해서 동일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형법 앞의 평등원칙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성격이 다른 행위들을 차별할 수 있다(판시이유 10).

9) 형법전 제226-4조는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및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거주하는 행위를 처벌한다(판시이유 11).

10) 심판대상법률 제1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형법전 제226-4조가 규정하는 범죄행위의 적용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심판대상법률 제1조와 형법전 제226-4조가 규정하는 범죄행위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심판대상법률 제1조의 주거용 또는 상업적, 농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의 건물 개념이 반드시 형법전 제226-4조가 규정하는 주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판시이유 12).

11) 따라서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일정한 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범죄행위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주거를 침입하는 범죄행위는 다른 성격을 가진 범죄행위이다(판시이유 13).

12) 따라서 형법 앞의 평등원칙을 반한다는 청구이유는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14).

13) 그러므로 심판대상법률 제1조에 따라 보충된 형법전 제315-1조는 법률의 접근가능성과 명확함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한다(판시이유 15).

2. 심판대상법률 제2조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2조는 민사집행절차법전 제L. 412-3조를 보충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자는 퇴거 명령이 내려진 건물을 점거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 기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판시이유 16).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2조가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2조가 개인적 또는 가족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빈곤층의 퇴거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품위 있는 주거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17).

3) 첫째로,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이 도출된다(판시이유 18).

4) 민사집행절차법전 제L. 412-3조의 규정에 따르면, 퇴거명령을 내리는 법관은 건물을 점거하는 사람에게 갱신 가능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절차법전 제L. 412-4조는 건물의 점거자 또는 소유자 각각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갱신 가능한 기간은 1개월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정해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판시이유 19).

5) 심판대상법률 제2조는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건물에 침입한 점거자에게 이와 같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판시이

유 20).

6) 퇴거명령이 내려진 점거자에게 적용되는 심판대상법률 제2조는 점거자가 퇴거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관 앞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21).

7) 둘째로, 1789년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훼손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규정한다. 1789년 인권선언 제2조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과 특히 주거의 불가침성이 도출된다(판시이유 22).

8) 1946년 헌법전문(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리고자 했던 체제에 대해 자유로운 인민들이 승리를 쟁취한 다음날, 프랑스 인민은 인종, 종교, 믿음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고 성스러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새로이 선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적 권리, 헌법적 자유 및 헌법적 원칙들을 재확인 및 선언하였다. 1946년 헌법전문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노예화 및 타락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칙이 도출된다(판시이유 23).

9) 한편으로, 입법자는 심판대상법률 제2조를 가결함으로써 퇴거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심판대상법률 제2조는 재산권과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가 보호하고 있는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로 부터 도출되는 법원의 결정의 집행을 획득할 권리를 구체화하였다(판시

이유 24).

10) 다른 한편으로, 갱신 가능한 기간의 혜택은 점거자가 거주하는 장소 또는 직업적 사용을 하는 장소에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침입한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으며, 퇴거명령을 내린 법관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제한다(판시이유 25).

11) 따라서 입법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헌법적 요청들 간에 조화를 보장 하였으며, 입법자가 보장한 이와 같은 조화는 명백히 불균형적이지 않다. 따라서 여러 헌법적 요청들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이유는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26).

12) 그러므로, 심판대상법률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절차법전 제L. 412-3조의 마지막 항은 다른 어떤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한다(판시이유 27).

3. 심판대상법률 제3조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3조는 주거를 침입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형벌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형법전 제L. 226-4조 제1항을 개정한다(판시이유 28).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3조가 심각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로 처벌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법률 제3조가 형벌의 필요성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29).

3) 개정 전 형법전 제L. 226-4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1년의 금고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법률 제3조는 이와 같은 형벌을 3년의 금고 및 45,000유로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판시이유 30).

4) 입법자는 심판대상법률 제3조를 통해 처벌되는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였으며,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입법자는 명백히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지 않았다(판시이유 31).

5) 따라서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이유는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32).

6) 요컨대, 심판대상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형법전 제L. 226-4조 제1항의 《 15,000유로 》라는 용어와 《 45,000유로 》라는 용어는 형벌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헌법적 요청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한다(판시이유 33).

4. 심판대상법률 제6조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은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전 제L. 226-4조에 《 사람에게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 일체의 주거용 건물은, 사람의 거주 여부나 주된 거주지인지에 관계없이, 특히 본 조가 규정하는 주거이다 》라는 조항을 보충한다(판시이유 44).

2) 청구인들은 ‘특히’ 및 ‘동산이 포함된 일체의 주거용 건물’이라는 표현이 주거 개념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법률의 접근가능성과 명확함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에 따른 주거침입죄의 확대가 형벌의 필요성 원칙 및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45).

3) 형법전 제L. 226-4조는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및 침입한 이후 거주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파기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형법전 제L. 226-4조의 주거는 사람의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이라고 스스로 말할 권리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판시이유 46).

4)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은 특히 사람에게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 일체의 주거용 건물을, 사람의 거주 여부나 주된 거주지인지에 관계없이, 주거로 인정한다(판시이유 47).

5) 첫째로, 입법자는 주거용 건물의 정의와 관련된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거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판시이유 48).

6) 입법자는 사람에게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 일체의 주거용 건물을 주거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동산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벌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산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이라고 스스로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판시이유 49).

7) 판시이유 49에서 실시한 유보 하에,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은 형벌의 필요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의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이

유는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50).

8) 둘째로, 입법자는 일정한 주거용 건물을 주거로 규정하면서, 불명확한 규정을 가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이유는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51).

9) 마지막으로, 형법전 제L. 226-4조가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심판대상법률 제6조 I이 아닌 심판대상법률 제3조에 근거한다. 따라서 형벌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이유는 배척되어야 한다(판시이유 52).

10) 따라서, 형법전 제L. 226-4조의 마지막 항은 법률의 접근가능성과 명확함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 및 다른 어떤 헌법적 요청에도 반하지 않으며, 판시이유 49에서 실시한 유보 하에 헌법에 합치한다(판시이유 53).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는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를 개정하였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서 주거로부터의 퇴거에 관한 행정절차의 적용 대상을 일체의 주거용 건물로 확대하였다(판시이유 54).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가 점거자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도지사가 점거자의 즉각적 퇴거를 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과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며, 평등 원칙 및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55).

3) 1789년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훼손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규정한다. 1789년 인권선언 제2조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과 특히 주거의 불가침성이 도출된다(판시이유 56).

4)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는 자신의 주거가 불법적으로 점거당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 하에 도지사에게 점거자의 퇴거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점거자가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주거에 대한 강제적 퇴거를 진행해야 한다(판시이유 57).

5)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는 이와 같은 절차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조건 하에 일체의 주거용 건물로 확대하였다(판시이유 58).

6) 첫째로, 입법자는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를 가결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점거된 일체의 주거용 건물의 신속한 퇴거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입법자는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판시이유 59).

7) 둘째로, 한편으로는 도지사의 퇴거명령은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해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침입 및 거주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지사의 퇴거명령은 신청자가 고소를 제기하고, 해당 주거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사법경찰관, 시장 또는 집행관이 불법점거라는 점을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도지사는 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한 부정한 방법, 위협, 폭력행위 또는 강요를 통한 침입 및 거주를 확인한 경우에만 점거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판시이유 60).

8) 셋째로,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는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점거자의 개인적 및 가족적 상황을 고려한 후에 퇴거명령 결정을 내린다고 규정한다.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가 퇴거절차를 허용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긴급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퇴거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3월 24일 결정 판시이유 126)에서 실시한 유보에 근거해서도 도지사는 점거자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상황을 고려하여 퇴거명령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판시이유 61).

9) 넷째로, 점거된 건물이 퇴거명령 신청자의 주거가 아닌 경우에, 도지사의 퇴거명령에 따르기 위해 점거자에게 부여된 기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판시이유 62).

10) 마지막으로, 행정법원법전 제L. 521-1조 내지 제L. 521-3조에 근거하여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퇴거 결정의 집행은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점거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명하는 행정적 결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점거자는 행정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판시이유 63).

11)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보장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법률 제6조 II는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 또는 주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지 않았다(판시이유 64).

12) 요컨대,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

6)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3월 24일 결정(Décision n° 2023-1038 QPC du 24 mars 2023)은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이 결정의 판시이유 12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 ‘대항할 수 있는 주거권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는 도지사가 긴급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거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그렇지만, 도지사가 퇴거의 요청을 받은 점거자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퇴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 및 주거의 불가침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의 ‘또는 주거용 건물에서’, ‘또는 자신의 재산’ 및 ‘시장이 또는 집행관이’라는 용어, 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문과 제4항 제2문의 ‘점거자의 개인적 및 가족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라는 용어는 평등 원칙 및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한다(판시이유 65).

5. 심판대상법률 제7조에 대한 판단

1) 민법전 제 L. 1244조를 개정하는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불법적으로 점거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유지의무를 면제하고, 부동산의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또한 면제하고 있다(판시이유 66).

2) 청구인들은 부동산 소유자의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심판대상법률 제7조가 대부분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불법 점거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률 제7조가 품위 있는 주거를 향유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보호 원칙, 정상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법률 앞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67).

3) 1789년 인권선언 제4조는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은 입법자가 공익을 이유로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익을 이유로 책임의 배제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권리 및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서 도출되는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판시이유 68).

4) 또한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은 입법자가 공익을 이유로 엄격한 무과실 책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소유자의 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판시이유 69).

5) 민법전 제L. 12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파손이 유지의무의 위반 및 건축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손해의 원인이 외부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판시이유 70).

6)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점거된 경우에 소유자는 불법 점거 기간 중의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자격이 없는 점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판시이유 71).

7) 입법자는, 건물의 파손이 유지의무의 위반 및 건축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는 책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였다(판시이유 72).

8)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불법점거 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면제의 혜택을 부

동산 소유자에게 부여하였지만, 손해의 원인이 권리나 자격이 없는 점거자의 유지의무 위반에 있다는 점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책임 면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이와 같은 점거자의 행위가 필수적 보수공사의 진행을 막았다는 점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판시이유 73).

9) 둘째로,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소유자의 책임 면제가 권리나 자격이 없는 점거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법률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책임 체계는 피해자의 배상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는 권리나 자격이 없는 점거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판시이유 74).

10) 따라서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건물의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획득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판시이유 75).

11) 요컨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청구이유를 검토할 필요 없이, 심판대상법률 제7조는 헌법에 반한다.

IV. 결정의 의의

심판대상법률인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2023년 7월 27일 법률’은 주택의 불법점거자로부터 소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불충분한 주거에 대처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심판대상법률을 ‘가난의 진정한 범죄화’ 또는 ‘세입자 및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상원의 마지막 독회개최되었을 때, 상원 앞에서 ‘주거는 범죄가 아니라, 권리이다!’(Se loger

n'est pas un crime, c'est un droit!)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⁷⁾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심판대상이 된 심판대상법률의 조항 대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보았고, 한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으로 점거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유지의무를 면제하고, 부동산의 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또한 면제하는 심판대상법률 제7조가 1789년 인권선언 제4조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3/07/26/loi-antisquat-le-conseil-constitutionnel-valide-le-texte-a-l-exception-d-un-article_6183514_823448.html?lmd_medium=al&lmd_campaign=envoye-par-appli&lmd_creation=android&lmd_source=default, 2023. 10. 16. 방문.